

◆며느리권씨 일전 23-1

문충공 선원 김상용의 貞夫人 권씨 (추밀공파 23세, 권개권한의 딸)

효종의 인선왕후의 외조모, 현종의 외증조모



김상용이 살았던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仙杏里)에 위치해 있으며 1658년(효종 9)에 사역되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렬사로 232(선원면)에 소재하고 주변 김상용(金尙容)-전(前)의 정·동벽위(東壁位), 이상길(李尙吉)-전(前)공조판서·홍명형(洪命亨)-승문원부제조, 이시직(李時稷)·봉상시정·윤계(尹葵)-남양부사, 윤집(尹集)-교리, 황선신(黃善身)-강화부중군, 권순장(權順長)-별자, 김익겸(金益謙)-생원, 이돈서(李淳敍)-민성(閔昇)-파종, 안몽상(安夢祥)-파종, 전기업(全起業)-, 이삼(李參)-파종, 김득남(金得男)-점서·서벽위(西壁位), 황일호(黃一皓)-의주부윤, 신현(沈顯)-돈녕부도정, 윤익한(洪翼漢)-정평·심학사, 윤전(尹全)-필선, 김수남(金秀男)-서장관, 강위방(姜渭芳)-의전, 이돈오(李淳五)-훈련도감·강당·송시영(宋時榮)-사복시주부, 구원일(具元一)-강화부주전총(江華左部千總), 강홍업(姜興業)-강화우부전총(右部千總), 황대근(黃大坤)-파종(把摶), 차명세(車命世)-파종(把摶), 어재연(魚在淵)-진무중군(鎮撫中軍), 신미양요(1871) 순절, 어재순(魚在淳)-신미양요(1871) 순절, 어재순(魚在淳)-신미양요(1871) 순절, 어재순(魚在淳)-신미양요(1871) 순절

선원 김상용



성이 험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 76세였다. 손자와 종 한 명이 그 뒤를 따랐다. 사관은 그의 즐기에 “항상 몸을 단속하여 물러날 것을 생각하며 한결같이 바른 지조를 지켰으니, 정승으로서 칭송할 만한 업적은 없다 하더라도 한 시대의 모범이 되기에는 충분하였다.”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선조(宣祖)와 함께 조선조 최악의 군주 인조(仁祖)의 ‘담뱃불과 살’ 사망 주장이 있었다. 정통성 없는 쿠데타 세력의 수장 김류의 아들 김경징이 솔독에 빠져 범비를 태운하고 그는 즉시 도망쳤다. 이를 옹호한 것이다.

사진 네이버

김상용은 1561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안동(김태사 후예)이며 자는 경백, 호는 선원, 풍계, 계옹이다. 그는 선조 때부터 광해군, 인조 시대까지 활약한 조선의 정치가이자 문인으로, 그의 생애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과 관련이 있다. 아버지는 김극효, 어머니는 좌의정 정유길의 딸로, 고조부부터 여러 유력한 인물들과 연결된 가문에서 태어났다. 성훈, 이이 등과 교류하며 서인에 속해 정치 활동을 했다. 선조 시절, 1582년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란 속에서 정철의 부관으로 여러 차례 군사적 역할을 맡았다.

1594년에는 부인의 병환을 이유로 잠시 벼슬을 떠나 강화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 때 장소가 선원면이라는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며 외교 활동을 했으며, 광해군 즉위 후에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1613년 계축육사(영창대군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파직되었고, 후에는 광해군의 정권 하에서 영창대군 지지 등으로 여러 차례 좌천되기도 했다. 이는 김상용의 동생 김상현이 인목대비 부친 김제남과 사돈 간이라는 문제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선조 년간 김상용은 대사간으로 재직 중, 선조에

게 궁궐의 엄숙하지 못한 분위기와 언론의 미비함을 비판하였다. 그는 “소인배들이 궁궐 내에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윤홍과 이수 등이 조정의 인사 정보를 빼내어 개인적인 이익을 쟁였다고 밝혔다. 이정구를 비롯한 다른 대신들은 “김상용이 훌륭한 직언을 해냈다”며 그의 용기와 결단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이를 “조양에서 봉황이 우는 것 (朝陽之鳴)”에 비유하며 그의 과감한 직언을 칭송하였다. 하지만 아버함과 캠플레스의 아이콘 선조는 뒤로는 김상용에게 매우 노여워 했다고 전해진다.

인조 반정 당시에는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김상용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여러 차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유배당했지만, 그가 활동한 여러 지역에서 좋은 치적을 남기기도 했다. 1621년 유배 중 모친상을 당하고, 이후 1623년 인조 반정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충청도 검찰사로서 활약했다. 그는 진사로 출사하여 1590년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고위직을 거쳤다. 처삼촌인 권율과 함께 전란에 종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강화도로 피난을 가면서도 충성을 다했으며,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사간, 판돈녕부사, 예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며 왕의 신뢰를 받았다. 1636년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로 피난하여 성이 험락되자 자결하였다. 그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에 있으며, 문충의 시호를 받았고 여러 사당에 제향되었다. 그의 문집인 “선원유고(仙源遺稿)”는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판본은 안동 봉정사에 보관되어 있다.

김상용 집터의 ‘백세청풍’은 끝까지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킨, 중국 상(商)나라 말기의 전설적 형제인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이야기에서 유래하고, 이글씨는 주자의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상용의 백세청풍은 ‘백세대가 가도록 청나라의 침략을 잊지말라!’는 뜻일 수도 있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병자호란은 그냥 넘어갈 일이었거나 조금만 버티면 후금군대는 철수할 형편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전쟁으로 국면을 타개하고 권력을 유지 하려다가 일어난 것이다. 암군 인조, 그리고 노론 수구 세력의 잘못이다.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 땅에서도 있을 뻔 했으니 기가 막힌 일이다.

사진 네이버

선원면 충렬사

강화도 선원면에는 충렬사(忠烈祠)가 있다. 여기는 전에 선원사(仙源寺)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종때 김상용의 흐를 따서 선원면이라 하였다 고도 한다. 그리고 실제 김상용이 거주한 지역이고 병자호란 때 후금(後金)의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성루에서 폭약을 터뜨려 자결하니 그의 시신은 없고 신발 한짝만 떨어졌다고 신발 떨어진 장소에 사당을 건립한 것이다. 묘소는 의복만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권문의 권순장(權順長·추밀공파 24세)도 당시 같이 순절하니 후에 배향되었다. 그는 별좌(정5품)이지만(후에 좌찬성 추서) 충렬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니 충렬사의 명칭과 함께 빛나는 일이다.

충렬사는 1642년에 병자호란 때 순절한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사우로, 현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에 위치해 있다. 이 사우는 김상용, 이상길, 이시직, 심현, 구원일 등 병자호란 당시 순절한 6인의 충신을 향사하기 위해 세워졌다. 1658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이후 권순장, 어재연(신미양요 전사)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1728년부터 1788년까지 순절한 인물들이 주로 추향되었고, 그들의 순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배향 순서도 조정되었다. 현재 충렬사에는 총 29명이 배향되어 있으며, 충렬사는 사우 건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역사적 문서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순절한 인물들의 충성을 기리고 있다. 대원군 서원 철폐 시에도 그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심리학박사)



기도(祈禱, 呪文, 眞言, 만트라)

TV를 시청하려면 흔들거나, 두드리거나, 소리를 질러서는 안되고 지금은 리모컨을 눌러야 한다. 그래야 자기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려면 해당 채널번호를 눌러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기계의 작동이나 우리들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정해진 코드가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는 왜, 이 모양이 끝인가?’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술잔을 드는데,

왜 그럴까? 그 답은 분명하다. 인생의 코드를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렇다. 마치 T.V채널을 옮기듯이 정해진 것을 따르지 않고, 흔들고, 두드리고, 소리만 지르고….

종교를 가진 많은 이들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부처님, 알라 등에게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祈禱)하는데, 기도의 코드를 모른 체, 자기의 욕심대로 부르짖기만 하니

가히 개탄할 일이다. 코드란 ‘맞춤 방식’, ‘맞춤 말’이다. 이 맞춤이란 대상과 나와의 완전한 소통을 이르는 것이다. 모조록 이 기도의 코드를 바로 찾기를 앙원한다.

종교마다 신앙의 대상이 달라 헛갈리지만, 우주에는 무엇이라 이를 지을 수 없어도 절대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다. 그것은 마치 산의 정상이 하나이듯이 모든 종교를 초월하여 그 진리 또한 하나뿐이니, 우주 안의 사람이 같듯이, 우주 안의 진리를 찾는 마음 또한 같아져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써움질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의 종교만이 진리라고 말하지 말자!

제2장 맘(마음)에 대하여

이 우주에는 땅에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절대 진리를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종교는 제각각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 부처, 알라… 등으로 부르고 있다.

거기에 대하여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고 논쟁할 수는 있지만 진리는 만약 말 할 수 있고, 보고 또 들을 수 있다면 진리는 심히 혼란스러워할 것은 분명하다.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는 고해와 고행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일 것이다.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성서의 말씀이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마음을 아는 것이 곧 기독교의 거듭 나이요, 불교의 깨달음인 것을….

거듭남

사람은 세 번 태어나야 그 생명이 완성된다.

첫 번째 태어남은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남은 아이에서 성인(成人)이 될 때이고,

세 번째 태어남은 영혼의 거듭남(기독교)이며 깨달음(불교)을 이르는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남!

인간은 먼저 팽정이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울음을 터트리며 이 팽정이는 자신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자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체 그냥 젖을 먹고, 그냥 자라고 그냥 살아간다.

여느 동물과 다름없이 무엇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없이… 이는 마치 성서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팽정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씩 하게 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한다. 이를 테면 “내 것이야, 내가 할거야” 등을 말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여 나가는데, 이를 통해 ‘나(内)’라고 하는 것이 점차 형성되고, 나아가서 ‘미주(美醜), 선악(善惡), 유이불익(有利不益)’를 알아 가고, 옳고 그름(正邪) 등으로 자신만의 판단기준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태어남!

우리의 전통에 따르면 관례(冠禮)가 있다. 우리

여사를 살펴보면, 고려시대부터 15세가 넘으면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머리에 죽을 짚고 비녀를 꽂아 주는 의식을 행하였다.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해 준 것인데 갓(冠)을 쓰여 주었다 하여 관례라 했다.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세법상 신고기일과 납부기일(3)

마. 상속·증여세법상의 가산세

1) 보고서미제출 및 불분명가산세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1%

2)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매년말 현재 시가의 5%(가산세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3)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미이행, 장부작성·비치의무 또는 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범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

4) 출연자 등의 이사수 등 기준초과 가산세 : 출연자 등이 이사 현재인원(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의 1/5를 초과한 경우의 자·간접경비 : 1/5초과 이사등에 지급한 자·간접경비

5)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기준초과 가산세 : 초과보유주식 등의 매 사업연도 말 현재시가의 5%

6)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3항)-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또는 6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7)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통지의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의 감면

8)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 :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 사용기준금액의 미달사용액의 10%

9)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사용·미설정·미신고가산세 : 미사용시-사용처 않은 금액의 0.5%

10)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불이행 및 오류공시내용 가산세 : 공시대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등의 자산총액의 0.5%

11)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0.2%

12)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유건 및 의무이행여부 미신고가산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공의법 인 등의 자산총액의 0.05%



권오현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IV. 가산세의 종합한도와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협력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가산세가 너무 높지 않도록 가산세제도를 개선하여 종합한도(5천만원 또는 1억원)를 설정하였으며(단,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제외), 세법상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하는 규정도 제정하였다.(국기법 제48조①)

1. 가산세의 감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가산세를 감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현재지변등으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1항)-현재지변을 당한 경우 등 9가지 경우

2)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국기법 제48조 제2항)

일체고액(照見五蘊階空度一切苦厄)’이라는 말이 있다.

안아비설신(眼耳鼻舌身)은 눈, 귀, 코, 혀, 몸은 모두 신체의 감각기관이다. 이들이 쌓아 놓은 다섯 무더기 오온(五蘊)이다. 이 다섯 무더기는 하나로 뭉쳐서